

수원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나585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19나585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6. 19 선고 2018가단13738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

담당변호사 이춘산

변론 종결 2020. 6. 9.

판결 선고 2020. 8. 18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6. 19. 선고 2018가단13738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38㎡와 D 임야 11,961㎡'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6. 20. 접수 제4328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주문 제2항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E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은 2017. 12. 22. 사망하였는데, 자녀로는 피고(장남), 원고(차남), H(삼남), J(장녀)가 있다.

나. 망인은 2010. 1. 28.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2,099㎡를 피고에게, 안산시 상록구 F 대 235.4㎡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, 안산시 상록구 G 답 3,273㎡를 H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(이하 '이 사건 제1차 유언'이라고 한다)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(위 공정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0년 제118호).

다. 망인은 2011. 11. 17. 안산시 상록구 F 대 235.4㎡와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고(위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1505호),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G 답 3,273㎡를 H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였다(위 합동사무소 증서 2011년 제1506호, 이하 위 각 유언을 통틀어 '이 사건 제2차 유언'이라고 한다).

라. 안산시 상록구 C 임야 12,099㎡는 2016. 12. 28. C 임야 138㎡와 D 임야 11,961㎡로 분할되었다.

마. 피고는 2018. 6. 20. 라.항의 각 임야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7. 12. 22.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2차 유언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이 사건 제1차 유언을 철회하였으므로, 이

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철회된 유언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,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망인은 이 사건 제2차 유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제1차 유언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한 부분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.

1) 망인이 하나의 공정증서로 아들 3명에게 3개의 부동산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뺀 나머지 2개의 부동산에 관해서만 원고와 H를 각 수증자로 하여 수증자별로 1개씩 총 2개의 공정증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, 원고와 H에게 유증한 부동산은 이 사건 제1차 유언과 달라지지 않았다. 이처럼 원고와 H에게 유증한 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망인이 비용을 들이고, 공증에 참여할 증인들까지 직접 섭외하여 원고와 H에 대해서만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제1차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.

2) 망인(생전의 직업이 교사였다)은 이 사건 제2차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제자인 L, M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(망인이 자식들 사이에 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공증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점에서도 그의 제2차 유언은 제1차 유언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려는 망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), 그 과정에서 M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이 이 사건 제1차 유언 공정증서를 찢어 버렸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, 망인의 간병인이었던 K도 망인으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.

3)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(민법 제1110조), 다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원본이 공증인사무소에 보존되므로 유언자가 정본을 파기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법정철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. 다만,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망인으로서의 공정증서 원본을 파기하면 그에 따른 효력이 상실되는

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이 높다.

4)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유언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정본을 교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바, 이 사건 제1차 유언 공정증서는 파훼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

5) 망인은 생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안산시 N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 명의로 소유하도록 해 준 것으로 보이고,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지 않는 것이 피고에게만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.

다. 소결론

그렇다면,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은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,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.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,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을 취소하고,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강태훈

판사안희경

판사김봉남